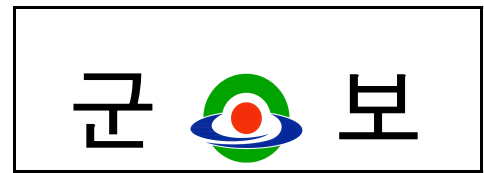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59호 2019. 4. 4.(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납세자 권리 헌장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17호)

공 고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471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47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예천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천군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7. 12. 26.시행)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금액 상향(안 제16조)

- 현행: 10만원 이하
- 개정: 2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87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eig65@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 ----- <u>20만원</u> ----- ----- -----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예 천 군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상향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2019.7.1.) 이후에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으로 일몰기한인

2022. 6. 30. 까지 뿐만 아니라 2022. 6.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면을 유지함(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상위법 조항 변경 및 기한연장(안 제3조)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2018년 12월 31일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3년간 기한 연장(안 제9조)

- 현행: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라. 자동계좌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안 제10조)

- 현행: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개정: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4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87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eig65@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	
(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	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	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	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	
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	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	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	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	
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	
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장애인에 대해 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2022년 6월 30일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
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38조제4항제2호에 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 2020년
12월 31일-----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

----- 500원
2. -----

----- 1,000원

② (현행과 같음)

